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28
----------	-----

2024. 11. 4.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4. 손민기의원 대표발의(15명 공동발의)

나. 상정의결

-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2024. 11. 26.)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손민기 의원)

- 구민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중독 예방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며 중독 문제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의(안 제2조)
- 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안 제5조)
-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행 사업(안 제7조)

체계적 기록·보고·분석·비교를 위한 국제표준인 국제질병분류(ICD) 제11차 개정안을 공표하고, 각 나라에서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음.

- 이 국제표준에 ‘중독성 행위 장애’가 등재되어 있고, ‘중독’을 관리 대상 질환으로 분류하였으며, 우리나라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ICD를 준용하여 데이터를 작성하고 있음.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센터 운영 현황

- 2024년 11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을 한 이후 설치 및 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전국에 총 60곳이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음.

[붙임 1] 각 지방자치단체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2024. 11. 기준)

-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3곳임.

[붙임 2]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2024. 10. 기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독관리 문제 현황 및 필요성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격년으로 실시하는 <서울시민 정신건강 인식 조사>³⁾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중독 문제⁴⁾로 인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서울시민은 33%(2023년 기준)인 것으로 확인됨.
- 전년도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이는 중복 응답을 허용하는 조사 특성, 전년도 보다 조사 항목 수가 추가된 점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자료를 해석할 때는 주의하여야 함.
- 서울 지역에서 중독 문제로 재활시설을 이용하는 등록자 수가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⁵⁾을 감안하면, 재활시설에 등록할 정도

3) 서울특별시 정신건강통계(SMHDB), 2023. 11., 연도별 정신건강문제 유형별 경험률(서울), 서울특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2023. 10., <2023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

4)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

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온 서울시민의 수는 이전부터 많았을 것으로 파악됨.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i)최근 3년간 강남구는 서울시 마약류 112 신고건수 1위(1,152건, 26.9%)⁵⁾로 관내 마약류 범죄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ii)강남구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전문심리서비스 이용자 528명 중 138명(26%)이 스마트폰·인터넷 등 미디어 과의존 등의 행동문제를 주로 호소하는 등 중독 문제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를 종합적으로 담당할 전문지원센터의 신설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임.

나. 검토 내용

○ 안 제2조제4호 신설

- 안 제2조제4호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어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였음.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정의)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관한 정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치법규인 조례에 해당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용어를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임.

○ 안 제5조 정비

- 안 제5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임.
- 안 제5조제3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동일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

5) 서울특별시 정신건강통계(SMHDB), 2024. 9., 연도별 중독자재활시설 진단별 등록회원 현황(서울), 서울특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데이터 분석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제공(경찰청 주요 112 신고 건수 현황).

의 정신건강증진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어서 묶어서 ‘각 센터’ 라고 지칭할 수 있으므로, 안과 같이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임.

< 안 제5조제3항의 각 센터 기능 및 개념 >

근거 법령			
정신건강복지법 및 그 시행령			
명칭	기능		개념
정신건강 복지센터 (심리지원 포함)	정신건강 증진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병원, 일부 의원, 일부 병원급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질환자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 운영,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기관 또는 단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 및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 수행		

- 다만, 단서 규정의 제10조제1항은 개정안과 같이 변경하지 말고, 현행과 같이 그대로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임.
- 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은 각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것이며,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 사업 건전성 및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임.
- 안 제5조제6항의 개정은 안 제5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임.
- 안 제6조·제7조·제10조 일괄 정비
 - 안 제5조제3항 신설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임.
- 안 제7조제3항 신설
 - 안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명시하였음. 이를 상위법령 규정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

서 제공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구분 및 사업영역> 자료⁷⁾에서 확인하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사업영역 및 세부사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구분 및 사업영역 >

구분		사업영역	세부사업
광역	필수 사업	광역중독관리사업 기획 및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중독건강 실태조사 중독 정신건강 인적자원 개발 지역사회 홍보·교육
		중독관련 사업 운영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 행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중독사업 운영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운영지원 및 관리
		광역중독관리체계 구축, 상호협력 및 연계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중독관리서비스 질적·양적 관리
	지역 특화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양성 및 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양성 및 활동지원
기초	필수 사업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 전 대상자 상담 단기개입상담(SBIRT)
		중독질환자 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독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중독질환자 재활프로그램 가족지원사업
	지역 특화	노숙인 등 취약계층 관리사업(해당 사업예산을 받는 경우 필수)	
		청년중독관리사업(해당 사업예산을 받는 경우 필수)	
		광역형 사업 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중독 정신건강 실태조사 지역사회 중독 관련 교육·홍보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양성 및 활동지원

- 이에 따르면 안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은 상위법령인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임.

7) 보건복지부, 2024. 10., <2024년 정신건강 사업안내>, p.106~107.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82).

○ 조례 정비에 관한 추가 의견

- 지난 조례 개정시 일부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 조례 정비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보임. 해당 미비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검토하는 부분과 개념상 직결되어 있어 △이번 개정안에서 다루는 부분의 핵심 개념과의 높은 연관성, △법률용어와의 통일성, △조례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도 제고, △향후 구민들에게 미치는 조례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속히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의견을 드리게 되었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관련 사항을 정리하면:
 - 현행 제1조에는 이 조례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위임조례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 이를 바로 잡으려면 해당 위임사항이 어느 법률로부터 위임된 것인지 명시함⁸⁾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현행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용어들은 상위법령에서 이미 정의한 용어이므로 법적 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에서는 다시 용어정의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입안기준⁹⁾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현행 제2조제4호의 “응급정신질환자” 라는 단어는 업계와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며,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각 병원 정신응급진료실에서 사용하는 적합한 용어는 “정신응급환자” 이므로 수정하여야 함.

[붙임 3] 전문용어: 정신응급환자 - 정신응급입원 흐름도

- 현행 제2조제5호의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이란 단어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행정입원), 제50조(응급입원), 제64조(외래치료 지원

8) 법제처 2022. 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자치법규 입안기준 입법례, p.95~96.

9) 법제처, <법제처 회신 15-0136 의견제시>, 정의규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확인하면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경찰관 등이 동원되어 사람을 안전하게 이송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는 ‘호송’ 이므로 “호송비용” 으로 수정하여야 함.

- 이번 개정조례안과 현행 조례의 정비대상용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제1조와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조례 관리의 용이함을 위해서도 이번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언 차원에서 수정의견을 제안함.
 - 현행 제2조제4호를 제2조제1항제1호로 하고, 용어를 정비함.
 - 현행 제2조제5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하고, 용어를 정비함.
 - 제2조제1항제3호를 신설함.
 - 제2조제2항을 신설함.

< 목적 및 정의 규정 비교 >

현 행	수 정 의 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u>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u>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u> 에 근거가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남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2조(정의) ① ----- -----. <삭 제> (위임조례의 경우: 법률에 규정된 용어정의는 조례에서는 다시 용어정의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삭 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삭 제>

1. “정신응급환자”란 -----

-----.
2. “후송비용”이란 -----

----- 응급입원,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등을 위하여 호송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다. 종합 의견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앞서 살펴본 마약류 신고 접수 현황, 보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로 인한 잠재적인 상담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보임.

- 그러므로 국민의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됨. 이를 위하여 조례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임.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계획 및 예산 집행

- 중독 문제의 개선 및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인정되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¹⁰⁾, 사업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작성 기준이 되는 보건복지부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붙임 4]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요업무 (2024. 10. 기준)

- 관리책임부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의 건강관리과에서는 위 지침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을 2025년 예산안에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붙임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계획 (2024.

11. 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 자료에 따르면 건강관리과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

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1호]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터를 현재 보건소 5층 공간에 신설하고, 예산안은 우선 구비 100%로 책정하되, 향후 공모사업 신청을 통하여 국·시비 확보할 예정임.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따른 각 센터 운영 평가, 정신건강사례관리 시스템을 통한 실적 관리, 정신건강현황 파악을 위한 평가지표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계획 중인 건강관리과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임.

※ 관계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1호]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6. 8.]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거나 권역별트라우마센터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3의3. 법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중독 문제와 관련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 참고 자료

[붙임 1] 각 지방자치단체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2024. 11. 기준)

시·도명	구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명칭
서울	광역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알코올중독 교육 등 일부 한정)
	기초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노원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부산	광역	부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사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해운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대구	기초	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대구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천	기초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남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부평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연수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광주	기초	광주광산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광주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광주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광주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광주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대전	기초	대전대덕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대전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대전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울산	기초	울산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울산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기	광역	경기광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고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김포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기	기초	의정부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파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강원	광역	강원광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원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춘천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충북	광역	충북광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청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충남	기초	아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천안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북	광역	전북광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전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익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남	기초	목포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여수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북	기초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포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남	광역	경남광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김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마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양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진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창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주	광역	제주광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서귀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	제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붙임 2]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2024. 10. 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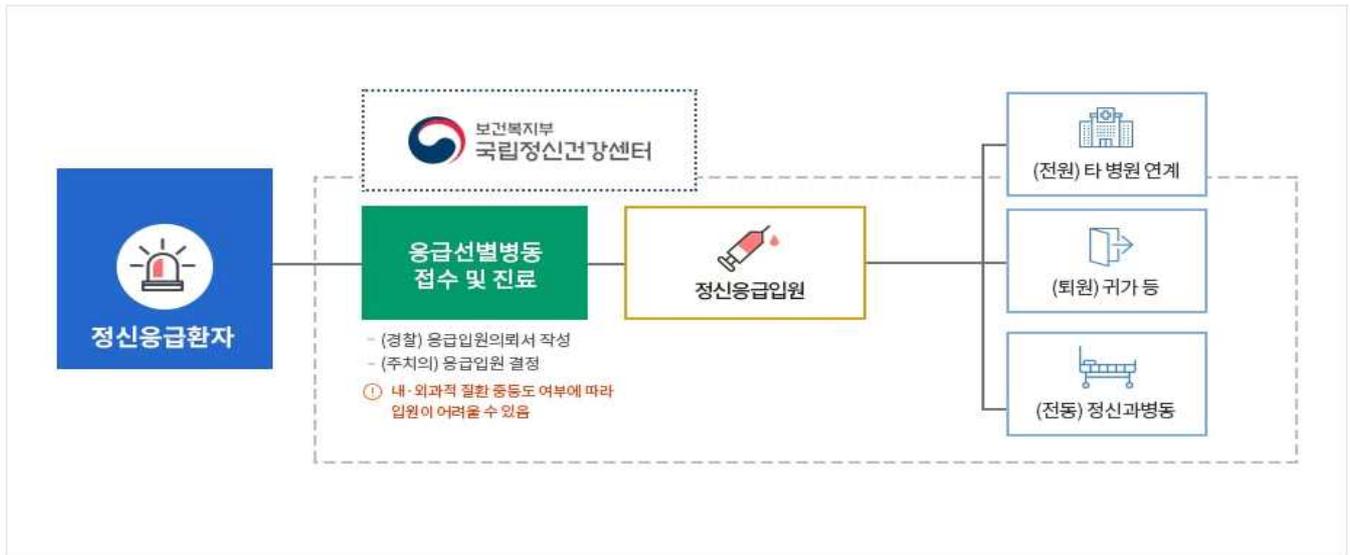
○ 현 황 : 서울시 3개 자치구에서 3개의 센터 운영 중

구분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관련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운영	기존 조례 개정사용	중독 관련 조례 없음	기존 조례 개정사용
운영형태	을지병원 위탁운영	을지병원 위탁운영	서진복지재단 위탁운영
시설현황	SH아파트 30년 임대 상 가 내 건물 사용(무상)	보건분소 사용	건물임대
인 력	비상근 센터장 1명 전문인력 7명	비상근 센터장 1명 전문인력 5명	비상근 센터장 1명 전문인력 5명

[붙임 3] 전문용어: 정신응급환자 - 정신응급입원 흐름도

(2024. 10. 기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응급입원 흐름도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 확인 자료

[붙임 4]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요업무

(2024. 10. 기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라,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요업무

구분	사업영역	세부사업
기본 사업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전 대상자 상담 • 단기개입상담(SBIRT)
	중독질환자 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독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 중독질환자 재활프로그램 • 가족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서비스 - 교육 및 프로그램
특화 사업	지역사회 중독정신건강증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중독 정신건강 실태조사 • 지역사회 중독 관련 교육, 홍보
		• 청년중독관리사업 (해당 사업예산을 받는 경우 필수)
		• 노숙인 등 취약계층 관리사업 (해당 사업예산을 받는 경우 필수)
		•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양성 및 활동지원

※ 지역 인구 규모 및 예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되 기본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역특성에 따라 특화사업 추진

1) 사업대상

가) 이용대상

- 지역사회 내 거주하는 주민

나) 등록기준

- 지역사회 내 중독문제가 있어 고위험군 이상으로 선별된 대상자 및 가족
 - 정신질환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 뇌전증, 치매, 지적장애, 발달장애는 제외
 - ※ 대상자에게 보다 적절한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과 협의를 통해 연계, 의뢰할 수 있음.

다) 퇴록기준

- 사망(질병, 각종사고, 자살, 기타), 전출·연계(전출일반, 기관연계), 서비스 종결(협의종결, 부재종결, 기관종결, 본인희망), 자살위험감소, 오등록, 기타
- ※ 세부 내용은 2024년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매뉴얼, 2023년 개정판 중독정신건강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 참고

2)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사업

가) 등록 전 대상자 상담

(1) 사업목적

개인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경찰, 행정복지센터 등)으로부터 의뢰접수 된 대상자에게 조기선별 및 중독상담 서비스 제공

(2) 사업내용

- 내소상담,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가정방문 및 지역 방문서비스 등을 통해 사정평가
- 초단기개입을 통해 단기개입 및 집중단기개입으로 연계되도록 동기 강화

나) 단기개입상담(SBIRT : Screening Brief Intervention Referral Treatment)

(1) 사업목적

중독자 조기발견 및 단기치료(SBIRT : Screening Brief Intervention Referral Treatment) 적용 단기개입 서비스를 통한 중독 고위험군 조기 중재 및 의뢰체계 구축

(2) 사업내용

- 중독 고위험군 조기선별 및 단기개입
 - 타 기관에서 조기선별 및 현장단기개입(On site) 1회기 후 의뢰한 경우, 의뢰서를 통해 최초 상담 입력 후 바로 집중단기개입 시행
 - 중독센터에서 조기선별부터 바로 개입하는 경우, 조기선별도구(AUDIT-K 등)를 활용한 선별 및 초단기개입 실시
 - 중독 고위험군으로 선별시, 1회기 단기개입, 3회기 이상 집중단기개입, 치료 의뢰 서비스 수행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 및 의뢰체계 구축
 - ※ 단기개입서비스는 반드시 대면상담으로 수행

〈 조기발견 및 단기치료-SBIRT 흐름도 〉



3) 중독질환자 관리사업

가) 중독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1) 사업목적

중독질환자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 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해 등록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중독질환의 효과적 관리

(2) 사업내용

● 중독자 고위험군 등 등록 및 맞춤형 ISP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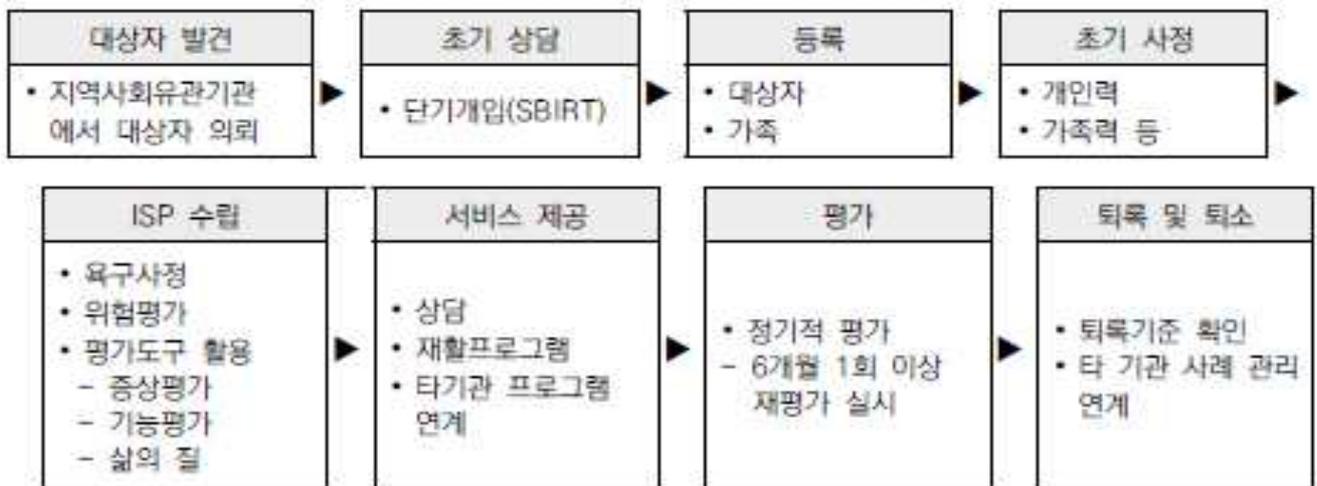
- 지역사회 유관기관(경찰,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에서 의뢰된 대상자 등 신규 발견된 중독질환자와 가족에 대해 사례관리 대상자 등록 면담, ISP 수립 등의 사례등록 수행
 - 초기사정: 대상자의 욕구 및 개인력, 병력, 치료력, 가족력 등을 사정(문제 개선 욕구, 자원 및 강점 등을 사정)
 - ISP 수립: 대상자 욕구에 따른 개별화된 계획 수립

※ 중독질환자 사례관리 관련 세부사항은 「중독 정신건강 표준사례관리 매뉴얼」 국립정신건강센터. (2021) 참조

● 등록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개별 및 가족상담(가정방문 및 내소상담), 자원관리 및 조정, 퇴원계획수립, 지역사회 자원조정, 재활 프로그램, 직업재활, 대상자 욕구에 따른 타기관 서비스 연계, 반기별 ISP 수립 수행
-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내외부 슈퍼비전 체계 운영

〈 지역사회 내 중독정신질환자 사례관리 과정 〉



나) 중독질환자 재활프로그램

(1) 사업목적

중독질환자의 재활 교육 및 훈련 지원, 사회적 관계 형성 지지를 통한 재발방지 및 사회적 관계 지지 형성

(2) 사업내용

- 중독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재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 중독 정신건강 교육, 인지행동, 재발예방, 12단계 촉진, 동기강화 등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 관계 지지를 위한 자조모임 운영 등 네트워크 형성
 - 정기적으로 재활 프로그램 네트워크 운영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포괄성 향상

다) 가족지원 사업

(1) 사업목적

중독질환에 대한 이해 향상 및 가족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독질환자·가족의 변화 및 회복 도모

(2) 사업내용

- 중독질환자 가족 신규발굴 및 상담서비스
 - 중독문제가 있는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등록관리 서비스 운영
 - 가족 단위의 통합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가족모임 지원 프로그램
 - 중독질환자 가족모임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족 자조모임 운영 및 지원 시행
- 가족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신규 발견된 고위험군, 등록대상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교육 및 프로그램 실행
 - 집단상담, 명상, 야외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 가족을 위한 중독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붙임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계획

(2024. 11. 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신규)

회계연도: 2025년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보건소 건강관리과	담 당: ㉠간호7급 연진현 / ㉡간호6급 안정연
기 능: 보건분야 보건의료부문	
정책사업: 건강관리	단위사업: 정신건강관리

알코올 및 기타 중독 문제가 있는 대상자의 지속적인 관리체계와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 도모와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년 7월 - 12월
- 총사업비: 351,678천원
- 사업위치: 강남구보건소 5층(선릉로 668, 5층)
- 사업내용
 - 중독 조기발견 및 개입, 중독질환 관리,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 청소년·청년층 대상 중독 예방 및 교육
- 지원형태: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
- 지원조건: 구비 100%
- 추진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 추진계획: 지침에 근거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보조금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수물품 사전승인	정보화 타당성	신규행사 및 축계성	정책연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출자· 출연	기 타 [조례(안) 제정 등]
○	-	-	-	'24하반기 예정	-	-	-	'25상반기 예정	-	'24하반기 예정

□ 소요재원

(단위: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전년도당초예산액 (B)	비교증감 (C=A-B)	증감률 (D=C/B)
계	351,678	0	351,678	순증
자체재원	351,678	0	351,678	순증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3
- 추진기간 : 2025. 1월 ~ 12월 (개소 2025. 7월 예정)
- 추진장소 : 보건소 5층(現 문화재단, 약 88평)
- 추진인력 : 센터장 포함 총 6명
- 사업대상 : 강남구민 / 마약, 알코올, 도박, 인터넷 등 중독 문제가 있는 대상자 및 가족
- 주요내용
 - (특화사업) 청소년·청년층 대상 중독 예방 및 교육
 - (중독 조기발견 및 개입) 고위험군 조기발견, 단기개입상담
 - (중독질환 관리) 중독질환자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가족 지원 등
 -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인식개선 및 홍보·캠페인 등 홍보 활성화와 다각화
 -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 및 인프라 구축) 검찰·경찰, 의료기관, 유관기관 등

□ 추진계획 신규

○ 중독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사업

- 중독 조기발견 및 개입 : 고위험군 조기발견, 단기개입상담
- 중독질환 관리 : 중독질환자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가족 지원사업 등
-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 인식개선 및 홍보·캠페인 등 홍보 활성화와 다각화

○ 중독예방 및 관리를 위한 특화사업

- 청소년·청년층 대상 마약류 및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 중독 관련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 검찰·경찰, 의료기관,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

○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통합 운영위원회 구성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심리지원센터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자문 및 평가

□ 추진일정



□ 소요예산: 351,673천원(보건복지부·서울시 예산 지원 확보 요청 중) (※공사비 별도)

- 산출내역: 인건비 156,730천원, 운영비 93,644천원, 자산취득비 등 101,299천원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24. 11. 26.)

- 질 의 : 구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가. 타구 운영 사례는 어떤가
- 답 변 : 서울시 안으로 보면 강북권 3개 구에서 운영 중이고, 전국 단위에서 60곳 정도가 운영 중임. 다른 지역의 센터는 알코올 중독 상담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임. 우리 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마약류나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 중독 문제에 집중하는 센터를 설치하고자 함
- 질 의 : 세곡보건지소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업무를 중독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중독도 정신질환의 일부로 볼 수 있지 않은가
- 답 변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주 대상이 정신질환자이고 중독은 마약류, 알코올, 도박, 디지털미디어의 4대 중독이 있는데 대상이 상이함. 중독 예방 및 관리는 전문적인 특수 분야이고 치료연계와 재활프로그램 운영까지 계획하고 있어 전문가와 의료기관 민간위탁을 통한 중독전문센터를 구상하고 있음.

7. 토론 요지

- 자치법규 입안기준, 상위법령 용어 및 관련 전문용어에 맞도록 조문과 용어를 수정·정비하는 수정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428호

발의일자 : 2024. 11. 26.

제안자 : 경제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 관리가 용이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법률에 규정된 용어 정의는 조례에서 다시 용어정리를 하지 않도록 하고자 조례의 목적 조문을 수정하고 정의 조문의 일부 호를 삭제함
-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항을 분리하고 체계적으로 조정함
- 관련 용어를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 현행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따라 정비함
- 신설되는 조문의 호에 근거 법조항을 명시하여 정의를 명확하게 함
- 수정된 용어가 사용된 관련 조문을 수정안 용어에 맞추어 수정함

2. 수정내용

- 조례의 목적 조문을 수정함(안 제1조)
- 조문의 항을 신설하여 법률에 규정된 정의를 조례에 반복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관련 법률의 조항을 명시함(안 제2조제2항)

- 법률에 규정된 정의의 반복적 규정을 피하도록 호를 삭제하고 개정안에서 신설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근거 법률 조항을 명시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 수정된 용어가 사용된 관련 조문을 수정안 용어에 맞추어 수정함(안 제6조제2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2항제1호, 제4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근거가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남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종전의 제5호) 중 ““응급정신질환자”란”을 ““정신응급환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위하여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종전의 제6호) 중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을 ““호송비용”이란”으로, “응급입원을 시킬”을 “응급입원,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등을 위하여 호송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제3항 단서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책임”을 “관리책임,”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정신건강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응급정신질환자”를 “정신응급환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응급정신질환자”를 “정신응급환자”로 한다.

1. 호송비용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현행과 같음)</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u>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u>에 근거가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강남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u>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p>1. “<u>정신질환자</u>”란 「<u>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u>」(이하 “<u>법</u>”이라 한다) <u>제3조제1호에 따른 망상, 환각, 사</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의) ① <u>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p><u><삭 제></u></p>

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신 설>

4.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타해 위험 등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삭 제>

<삭 제>

< 제3호로 이동. 수정 >

1. “정신응급환자”란 -----

으로 심신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 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2. “호송비용”이란 -----

----- 응급입원,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등을 위하여 호송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운영) ① (생략)

<신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심리지원센터(이하 “정신건강센터”라 한다)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제5조(각 센터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

제10조-----

-----.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센터 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삭 제>

⑥ ----- 각 센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

----- 관리책임, 그 밖에
-----.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건강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정신건강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정신건강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음주나 폭력 등으로 정신건강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수행사업)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터 -----
-----.

제6조(이용제한) 각 센터의 -----
--- 각 호-----
----- 센터 이용-----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7조(수행사업) ① -----
----- 각 호-----
--.

(개정안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센터

3.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1. ~ 10. (생략)

② 청소년심리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략)

<신설>

제9조(예산지원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1. ~ 10. (현행과 같음)

② -----
----- 각호-----.

1. ~ 7. (현행과 같음)

③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제9조(예산지원 등) ①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제9조(예산지원 등) ① (생략)

② -----
----- 정신
응급환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2.·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

제10조(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센터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2. (생략)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해 심의한다.

1. ~ 3. (생략)

⑤·⑥ (생략)

1.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각 호 -----
-----.

1.·2. (현행과 같음)

④ ----- 각 호 -----
--.

1. ~ 3.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

1. 호송비용

2.·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정신응급환자 보호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근거가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남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종전의 제4호) 중 ““응급정신질환자”란”을 ““정신응급환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종전의 제5호) 중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을 ““호송비용”이란”으로, “응급입원을 시킬”을 “응급입원,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등을 위하여 호송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의 제목“(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운영)”을“(각 센터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본문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심리지원센터(이하 “정신건강센터”라 한다)”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정신건강센터”를 “각 센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센터 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건강센터의”를 “각 센터의”로, “각호”를 “각 호”로, “정신건강센터 이용”을 “센터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신건강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응급정신질환자”를 “정신응급환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응급정신질환자”를 “정신응급환자”로 한다.

1. 호송비용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신 설>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운영) ① (생략)

<신 설>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정신응급환자”란 -----.

2. “호송비용”이란 -----

----- 응급입원,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등을 위하여 호송하는 -----.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5조(각 센터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심리 지원센터(이하 “정신건강센터”라 한다)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센터 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삭 제>

⑥ ----- 각 센터 -----

제6조(이용제한) 정신건강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정신건강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략)
2. 음주나 폭력 등으로 정신건강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생략)

제7조(수행사업)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10. (생략)
- ② 청소년심리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략)

<신 설>

제9조(예산지원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자해·타해 위험이 있

제6조(이용제한) 각 센터의 -----
--- 각 호-----
----- 센터 이용-----
-----.

1. (현행과 같음)
2. ----- 센터-----

3. (현행과 같음)

제7조(수행사업) ① -----
----- 각 호---
-.

1. ~ 10. (현행과 같음)
- ② -----
----- 각 호-----.
1. ~ 7. (현행과 같음)

③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제9조(예산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2. 3. (생략)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

제10조(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센터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2. (생략)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해 심의한다.

1. ~ 3. (생략)

⑤·⑥ (생략)

----- 정신
응급환자-----

1. 후송비용

2. 3. (현행과 같음)

4. ----- 정신응급환자 -----

제10조(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각 호-----
-----.

1. 2. (현행과 같음)

④ -----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민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8
----------	-----

발의연월일: 2024. 11. 4.

발 의 자: 손민기·김광심·이성수·
이도희·우종혁·윤석민·
이동호·이향숙·박다미·
황영각·전인수·복진경·
김진경·노애자·한윤수
의원(이상 15인)

1. 제안이유

최근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중 중독 문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알코올·인터넷 중독 등은 강남구민의 정신건강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강남구는 서울시 내에서도 마약류 관련 신고 건수가 높은 편에 속하며, 미디어 과의존 등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체계가 절실함. 이에 중독 예방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며 중독 문제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의(안 제2조)
- 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안 제5조)
-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행 사업(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의 제목“(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운영)”을“(각 센터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본문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심리지원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정신건강센터”를 “각 센터”로 한다.

-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

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센터 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건강센터의”를 “각 센터의”로, “각호”를 “각 호”로, “정신건강센터 이용”을 “센터 이용”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4. 5.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u></p> <p>5. 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p>
<p>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운영) ① (생략)</p> <p><u><신설></u></p> <p>② <u>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심리지원센터(이하 “정신건강센터”라 한다)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u></p>	<p>제5조(각 센터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구청장은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③ <u>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u>----- -----. -----</p>

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정신건강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센터 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삭 제>

⑥ -----
각 센터 -----
-----.

제6조(이용제한) 각 센터의 -----
----- 각 호-----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정신건강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7조(수행사업) ① 정신건강복지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10. (생략)

② 청소년심리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략)

<신설>

제10조(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 센터 이용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수행사업) ① -----

각호-----.

1. ~ 10. (현행과 같음)

② -----
----- 각호-----
--.

1. ~ 7. (현행과 같음)

③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제10조(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p>• ② (생 략)</p> <p>③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센터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u>각호</u>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p> <p>1. 2. (생 략)</p> <p>④ 위원회는 다음 <u>각호</u>에 대해 심의한다.</p> <p>1. ~ 3. (생 략)</p> <p>⑤ · ⑥ (생 략)</p>	<p>•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각 호</u>----- -----.</p> <p>1. 2. (현행과 같음)</p> <p>④ ----- <u>각 호</u>-----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	---